



##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 29984호, 2019. 7. 1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정하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과 발·다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던 장기등의 범위에서 손 및 팔을 삭제하는 등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등의 기증·적출·이식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 29983호, 2019. 7. 1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 1625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

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 29987호, 2019. 7. 1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의 업무 등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 29977호, 2019. 7. 1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23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보호결정 등을 위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제12조)

- 1) 보호신청자의 출생지·직업·가족관계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의 내용으로 정함.
- 2)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

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등의 서류나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제12조의2 신설)**

- 1)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시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 등을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으로 정함.
- 2)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이 마약 또는 무기·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신설)**

- 1)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사시설·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 2)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며, 인권보호관은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라.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사업주의 요건(제35조의5)**

연간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사업주로 정함.

**마. 기본금의 감액 사유 및 기준(제39조제3항 신설)**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시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금의 감액 사유 및 기준을 정함.

**바.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제42조)**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 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의 범위에 김해시와 화성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 29955호, 2019. 7. 9.,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저조한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특허

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7.] [대통령령 제 29963호, 2019. 7. 9.,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1호, 2019. 4.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1천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 29958호, 2019. 7. 9.,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중견기업자의 자긍심 고취와 대국민 중견기업 인식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주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207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전환 특례의 적용 대상 중견기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신설)

1)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허청장으로 함.

2)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

### 나.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제9조의6)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그 기한을 삭제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함.

### 다. 사업전환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제9조의8 신설)

중소기업자로 보아 중소기업과 같은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자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함.

**라. 중견기업 주간의 기간 등(제14조의2 신설)**

중견기업 주간을 매년 11월 셋째 주로 하고, 중견기업 주간에는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과 국민경제에 대한 중견기업 역할 등에 대한 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 29965호, 2019. 7. 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의 구조, 설비 및 설치 장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74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 29956호, 2019. 7. 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저조한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 29964호, 2019. 7. 9.,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에는 화장실, 목욕시설 및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침구 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 29957호, 2019. 7. 9.,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202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한 내역을 분기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 29946호, 2019. 7. 2.,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도로를 폐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입주자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근 주민의 통행 및 교통 편의를 위해 기존 도로를 유지·변경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 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 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 29936호, 2019. 7. 2.,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전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3세대)까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

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 29945호, 2019. 7. 2.,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으로,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